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9
----------	------

2022. 6. 21.(화)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미 경제기업과장)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안 제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노력(안 제4조)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제15조)
-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안 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는 전체사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이 99.9%로 전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근로자의 93.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의 경우 전체의 77.1%에 불과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19년 기준)
-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력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규모의 영세함과 우수인재의 부족,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제품구매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를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21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의무구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기관 구분	기관명	2021년 구매계획			2021년 구매실적			구매 목표 달성 여부
		총구매 합계(A)	중소기업 구매 합계(B)	비중	총구매 합계(A)	중소기업 구매 합계(B)	비중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청	395,865	336,288	85%	300,451	241,892	80.5%	미달성
지방 공기업	충북 개발공사	148,570	126,286	85%	116,061	99,909	86.1%	초과
지방 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7,832	8,928	50%	9,012	1,789	19.9%	미달성
지방 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5,416	12,696	50%	11,291	9,323	82.6%	초과

※ 출처: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2021년 기준)

-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함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 검토내용

###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은 없으나,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1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21.03
대 전 광 역 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7.02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
광 주 광 역 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20.09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
경 기 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2.03
강 원 도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1994.01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7.05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19.05

##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 중소기업의 수주(受注) 기회 확대 및 구매 목표 비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안정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영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단순히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영역에서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판로 등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추진계획 수립하고 공공영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증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장하는 중소기업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5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및 품질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관련 단체·법인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구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제기업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교육청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회의 조정·협약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해당 사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사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조정·협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협약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희망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존속기한) 협의회는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판로 확대 등에 기여한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 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 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다. 중소기업의 육성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u>중소기업의 육성</u>	5) <u>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u>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운영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2 ~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중소기업 판로 등 지원비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를 개척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 위원수당은 충청북도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근거로 작성함

### 나. 추계결과

- 중소기업제품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 우수여성기업제품 특별 전시판매전(18,000천원)

· 온라인 홍보	: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판매장 조성	: - 판매대 100천원 × 20조 × 2회	= 4,000천원
	: - 판매전 오프닝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인건비	: - 판매운영요원 100천원 × 40명 × 2회	= 8,000천원

○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112,500천원)

- 개별 전시·박람회 : 2,000천원 × 1부스 × 30업체 = 60,000천원
- 인터참코리아(충북관 참가 지원) : 4,500천원 × 1부스 × 10업체 = 45,000천원
- 제경비(운영경비, 수수료 등) : = 7,500천원

- 메가쇼 참가지원(39,700천원)

- 장치비(부스 설치비, 부대장치비 등) = 30,000천원
- 제경비(운영경비, 수수료 등) = 9,700천원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160,000천원)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5,000천원 × 30개사 = 150,000천원
- 제경비(수수료, 심사수당 등) : 10,000천원 = 10,000천원

○ 중소기업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 충청북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120,000천원)

- 상담장 임차료 = 10,000천원
- 장치비(상담부스 설치, 화상상담 시스템 사용료 등) = 47,000천원
- 바이어 관리 및 운영비 = 33,000천원
- 제 경 비 = 23,400천원
- 대행수수료 = 6,600천원

- 공공조달 시장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30,000천원)

- 컨설팅 지원(MAS, 벤처나라) 2,000천원 × 13업체 = 26,000천원
- 제경비(운영비, 수수료 등) 4,000천원 = 4,000천원

○ 비대면 판로지원

-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75,000천원)

- 홈쇼핑 방송 1회 입점 지원비 : 15,000천원 × 5개 업체 = 75,000천원

○ 중소기업제품 사후관리지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200,000천원)

·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2,000천원 × 100개 업체 = 200,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1,170천원)

· (출석수당) 9명 × 100천원 × 1회 = 900천원

· (원거리 출석수당) 9명 × 30천원 × 1회 = 270천원

○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

· 명절 특판행사 홍보물 제작, 단말기 사용료, 소모품 구입 등 = 9,000천원

※ 충북기업진흥원 자체 운영, 도비 부담분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 출	756,370	756,370	756,370	756,370	756,370	3,781,850
중소기업제품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152,200	152,200	152,200	152,200	152,200	761,000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컨설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비대면 판로지원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중소기업제품 사후관리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위원회 수당	1,170	1,170	1,170	1,170	1,170	5,85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정선미